##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9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・이학영・이원택

어기구 • 윤준병 • 주철현

정을호 • 박희승 •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·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·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 원·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 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·정원을 운영하는 자,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수목원 · 정원진흥기본계획	제6조(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
등의 수립) ① ~ ⑥ (생 략)	등의 수립) ① ~ ⑥ (현행과 같
	승)
<u> &lt;신 설&gt;</u>	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
	할 때에는 수목원 • 정원을 운영
	하는 자,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
	들어야 한다.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